

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정책기획관)

제출일 : 2022. 6.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 (안 제3조)
- 나.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 (안 제20조)
- 마. 부칙을 통한 시행일 지정, 일반적 경과 조치 및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 취지인,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 및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「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(안)」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